

# 2017년 제1회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공채 시험 공고

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17년 6월 5일

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

## 1 채용분야 및 인원

구분	시험	직렬	직급	인원	시험과목	담당업무
계				9		
일반전형	경력경쟁 시험	행정	5급	1	인·적성검사	행정업무
		전산	6급	1	인·적성검사	행정업무
		환경	7급	2	인·적성검사	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
	공개경쟁 시험	기계	7급	2	영어, 한국사, 기계공학	위탁시설물 관리 및 운영
		토목	7급	1	영어, 한국사, 토목공학	위탁시설물 관리 및 운영
		전기	7급	1	영어, 한국사, 전기공학	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
취업지원 대상전형	공개경쟁 시험	환경	7급	1	영어, 한국사, 환경공학	하수종말처리장 관리

※ 2개 분야 이상 복수지원 불가

## 2 전형절차

구분	1차	2차	3차	비고
경력경쟁	서류심사	인·적성검사	면접심사	취업지원대상자로 자격요건 제한함
공개경쟁		필기시험		
공개경쟁(취업지원대상)		필기시험		

○ 서류심사: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,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

○ 인·적성검사

- 인성검사: 9개 항목/240문항/30분
- 직무적성검사: 7개 항목/70문항/60분

○ 필기시험

구분	임용예정 직렬	과목수	과목	비고
공개경쟁(일반)	기계	3	영어, 한국사, 기계공학	
	토목	3	영어, 한국사, 토목공학	
	전기	3	영어, 한국사, 전기공학	
공개경쟁(취업지원대상)	환경	3	영어, 한국사, 환경공학	

- 출제문항: 과목별 20문항/75분/100점 만점, 객관식 4지 선다형
- 선발기준: 각 과목별 40점 이상, 전 과목 총점 평균 60점 이상  
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○ 면접심사

- 심사기준
  - 공단 직원으로서의 해당 직무 이해도
  -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
  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  - 응용력, 창의력, 의지력, 그 밖에 발전가능성
- 기타사항: 필기시험 점수는 미포함

**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**

○ 전형절차 공통사항

-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

**3****응시 자격요건**

(기준일 : 공고일)

 **공통기준**

가. 연 령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

나. 거주지: 1) 또는 2)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

1)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일)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
2)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※ 거주지 확인은 “개인별 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확인하며, 행정구역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 변경이 있는 경우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함

※ 취업지원대상자 전형 거주지 별도 제한 없음

다.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

라.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

마.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

**<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>**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미성년자
3.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4.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**<지방공무원법 제31조>**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**자격요건(기준일 : 공고일)**

-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1개 분야만 응시 가능하고, 자격요건 미달 시 응시 불가

구분	직렬	자격요건
경력경쟁	행정 (5급)	<p>▶ <u>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무원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으로 관련분야(행정) 3년 이상 경력소지자 ※ 폐지되기 전 기능직 포함</li> <li>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, 기업체(상시 종사자 100명 이상)에서 대리급(또는 상당의 직) 이상의 직으로 해당분야(행정)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</li> </ol>

구분	직렬	자격요건
경력경쟁	전산 (6급)	<p>▶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,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무원 8급 이상 또는 9급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※ 폐지되기 전 기능직 포함</li> <li>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, 기업체(상시 종사자 50명 이상)에서 주임급(또는 상당의 직) 이상의 직으로 해당분야(전산)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
	환경 (7급)	<p>▶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, 제1호~제3호: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제4호 자격증 미 소지자 가능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소지자 ※ 폐지되기 전 기능직 포함</li> <li>2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, 기업체(상시 종사자 50명 이상)에서 사원급(또는 상당의 직) 이상의 직으로 해당분야(수질)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</li> <li>4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, 기업체(상시 종사자 50명 이상)에서 사원급(또는 상당의 직) 이상의 직으로 해당분야(수질)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
공개경쟁 (취업지원 대상)	환경 (7급)	<p>▶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← 보훈지청 증명서로 확인</li> </ul>

## □ 자격증

- 아래 직렬은 관련 분야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, 자격증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함

구분	직렬	자격증
공개경쟁 시험	기계	자격증: 에너지관리(산업)기사, 가스(산업)기사, 열관리(산업)기사, 소방설비(산업)기사-기계분야, 일반기계(산업)기사
	토목	자격증: 토목(산업)기사
	전기	자격증: 전기(산업)기사

※ 경력경쟁 및 취업지원 대상 전형은 자격요건 참고

## 4

## 시험 일정

※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채용절차	일정	비고
채용공고	6.5(월)~6.16(금)	•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 ※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불가
원서접수	6.12(월)~6.19(월)	• 접수처 : 채용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myfmc.torc.co.kr">http://myfmc.torc.co.kr</a> ) • 접수마감 : 6월 19일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장소 공고	6.21.(수)	• 공단 및 밀양시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, 채용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myfmc.torc.co.kr">http://myfmc.torc.co.kr</a> )에 공고
1차 필기시험/ 인·적성검사	6.24.(토)	•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
필기시험 및 인·적성 검사 합격자 발표 / 면접 시험장고 공고	6.28.(수)	• 공단 및 밀양시 홈페이지,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, 채용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myfmc.torc.co.kr">http://myfmc.torc.co.kr</a> )에 공고
면접시험	7.1.(토)	• 필기시험 및 인·적성검사 합격자 대상
최종합격자 발표	7.5.(수)	• 공단 및 밀양시 홈페이지,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, 채용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myfmc.torc.co.kr">http://myfmc.torc.co.kr</a> )에 공고, 개별통보

## 5

### 제 출 서 류

※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

- 지원서 작성은 채용홈페이지 (<http://myfmc.torc.co.kr>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,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(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) 1부

② 자기소개서(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) 1부

③ 직무수행계획서(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) 1부

※ **경력경쟁시험 지원자 중 행정 5급 및 전산 6급에 한 함**

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동의서(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) 1부

⑤ (하나의 PDF파일로 순서대로 묶어서 첨부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주민등록 초본, 경력/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자격증 사본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1부

※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졸업증명서도 첨부, 주민등록초본은 거주지 변동 및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 제출, 경력/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직급, 근무 부서/업무, 법인사업체 여부(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) 기재

※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

※ 경력/재직증명서 발급 시 업무와 기간, 기업체 종사자 수를 명시하여야 하며, 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

※ 취업지원대상자 전형 지원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증명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
-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,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. 또한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## 6

### 보수 및 복무

-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, 취업규정, 연봉제규정 등에 따름

## 7

## 가 산 특 전

구분	세 분	가점비율	비고
취업 지원 대상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2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3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4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5.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6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ol>	필기, 면접시험 만점의 10%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하여,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2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3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4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5.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6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ol>	필기, 면접시험 만점의 5%	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(10% 또는 5%)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 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

## 8

## 기 타 사 항

-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,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※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.
- 임용은 채용신체검사,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,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및 밀양시청 홈페이지,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, 채용홈페이지(<http://myfmc.torc.co.kr>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(☎ 055-359~4603~4)